



# 차별 행위에 대한 정보

> 여러분의 권리를 이해하여 불만사항을 해결하십시오

## 차별 행위

빅토리아주의 법률은 차별 행위와 성희롱, 왕따, 인종 및 종교적인 비방으로부터 시민들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차별 행위란 다른 사람을 다음과 같은 이유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입니다:

- 인종이나 피부색, 출신 배경, 국적, 조상 및 인종 배경
- 종교 신념이나 종교 활동 참여
- 장애나 질병, (직업 관련 부상을 포함한) 부상
- 부모나 보호자로서, 자녀나 다른 가족 구성원들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
- 연령. 연소자나 노인, 또는 일반적으로 나이가 원인이 된 경우
- 성별
- 구직 활동에서 구직자가 직장에서 자신의 권리나 상여금에 대한 질문이나 우려를 표명한 경우
- 노동 쟁의 활동. 노조 가입, 노동 쟁의 참여, 또는 노조에 가입하지 않기로 결정
- 신장이나 체중, 체격, 털이나 반점 등의 신체적 특징
- 임신과 모유 수유
- 합법적인 성 행위
- 이성애자, 게이, 레즈비언, 양성애자, 성전환자, 트랜스젠더, 동성애자 등의 성적 취향이나 성 정체성

- 결혼이나 이혼, 미혼, 사실혼 등 혼인 관계
- 정치 신념이나 정치 활동 참여, 또는 일체 참여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 위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과 관계가 있거나 관계가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

성희롱도 법률 위반 행위로서, 이는 성적인 발언이나 전자메일,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이나 성행위 요구, 섹스 관련 물품들을 부적절하게 보여주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 차별행위가 법률 위반이 되는 상황과 장소

빅토리아주 법에 따르면 아래의 상황과 장소에서 일어나는 차별 행위는 불법입니다:

- 숙박 시설
- 클럽
- 교육 기관
- 풀타임이나 파트타임, 비상근 근로자, 계약직이나 임시직, 훈련생, 견습생
- 재화와 용역
- 부동산 판매와 양도
- 지방 정부
- 스포츠.



## 차별행위의 유형

직접적인 차별행위는 법률이 보호하는 개인적 특징을 이유로 타인을 부당하게 취급할 때 발생합니다.

구직 활동 중인 조지는 스스로가 충분한 자격을 갖추고 있다고 믿는 직종에 신청하였으나 자신의 인종 배경 때문에 면접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간접적인 차별행위는 개인적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채 모든 사람을 획일적으로 취급함으로써 특정 개인에게 불이익을 줄 때 일어납니다.

한 가게 관리자는 개인 수표를 사용하는 모든 고객들에게 운전 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였으나, 라미시는 시각 장애인이므로 운전 면허증이 없다.

## 차별을 목적으로 한 정보 요청 행위

법적으로 보호받는 타인의 개인적인 특징에 대한 정보를 요구하며, 이것이 차별적인 방법으로 사용되면 법률 위반입니다.

엘리는 취업 면접에서 혼인 여부와 가족 계획에 대한 질문을 받았으며, 그 직종에 최적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합격하지 못했다.

## 비방

비방은 인종이나 종교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단체를 증오하거나 존중하지 않거나 또는 나쁘게 매도하도록 부추기는 행위를 말합니다.

비방은 특정 인종이나 종교 단체에 대한 구두나 서면, 인터넷, 신체 행위를 통해 이들을 조롱하거나 이들에게 반감을 갖도록 유도하고 폭력을 부추기며 기물을 파손하거나 이들에게 불리하도록 허위로 진술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타인에 대한 비방을 허가하거나 돕는 것도 법률 위반 행위로서, 예를 들어 특정 개인이나 단체에 대한 정보를 발행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인종 차별 행위에 대한 언론 기사를 발표하는 등 이치에 맞고 좋은 의도로 한 일이라면 비방에 해당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정 개인의 인종이나 종교에 관한 의사 표현이나 농담은 비방이 아닐 수도 있으나, 그 행위가 법률이 정한 8개의 공공 장소와 상황에서 발생했다면 이는 여전히 차별 행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 왕따

왕따는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거나 불만 사항을 제출하거나 다른 사람의 불만 사항 제출을 도왔다는 이유로 특정 개인에게 해를 입히거나 따돌리는 것입니다. 왕따도 법률 위반 행위입니다.

## 불만 사항은 Commission에 제출하십시오.

부당하게 차별을 받았거나 성희롱, 비방, 왕따를 당했다고 생각할 경우 저희에게 연락하시면 그 처리 절차에 대한 정보를 보내 드립니다. 저희가 도울 수 없을 때에는 이에 적합한 개인이나 단체를 소개해 드립니다.

불만 사항을 편지나 전자메일 또는 저희의 온라인 불만사항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셔도 됩니다. 희망하는 언어로 접수하시거나, 저희에게 전화를 거시면 내용 작성을 도와 드립니다. 이 서비스는 무료이며 변호사가 필요 없습니다.

Commission은 귀하가 제출한 불만 사항을 해결하도록 도와 드립니다. 그러나 귀하를 대변하거나, 또는 귀하가 불만 사항을 제출한 상대자나 단체를 대변하지도 않습니다.

저희는 불만사항이 접수되면 자세한 내용 확인을 위해 직접 제출자 본인에게 연락하여 화해를 통한 문제 해결 방법을 안내하는 한편, 제출자가 어떤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희망하는 지에 대해서도 상의합니다.



Commission 은 일반적으로 귀하가 불만 사항을 제출한 상대자 개인이나 단체에 연락하여 그 내용의 사본을 전달한 후 당사자의 의견을 묻고, 그 반응을 다시 귀하에게 알려 드립니다.

단, 위원회가 귀하의 불만사항을 처리할 수 없다고 판단할 때도 있습니다. 이 때 저희는 귀하에게 연락하여 그 이유를 설명해 드립니다.

위원회는 대부분의 경우 귀하와 그 상대자 개인이나 단체간에 화해를 통한 해결책을 모색합니다. 화해는 중재자를 통한 일대일 만남이나, 전화 통화, 전자메일, 문자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불만 사항은 직접 사과를 하거나, 정책 변경, 직원 교육, 보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해결될 수 있습니다.

## Commission에 대하여

Victorian Equal Opportunity and Human Rights Commission은 독립된 법정 기관으로서 아래의 세가지 법률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 *Equal Opportunity Act 2010*
- *Racial and Religious Tolerance Act 2001*
- *Charter of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 Act 2006*

## Commission이 제공하는 서비스는 아래와 같습니다:

- 무료 전화 문의 서비스
- 무료 공정 분쟁 해결 서비스
- 균등 기회, 인종과 종교 비방 및 **Charter of Human Rights and Responsibilities**에 대한 정보와 교육 서비스
- 교육 및 훈련, 자문 서비스

균등 기회와 인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저희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연락처

문의 전화: 1300 292 153

통역 서비스: 1300 152 494

전자메일: [enquiries@veohrc.vic.gov.au](mailto:enquiries@veohrc.vic.gov.au)

Level 3, 204 Lygon Street, Carlton Victoria 3053

전화: 1300 891 848

팩스: 1300 891 858

TTY: 1300 289 621

웹사이트: [humanrightscommission.vic.gov.au](http://humanrightscommission.vic.gov.au)

온라인 불만사항 신고서: [humanrightscommission.vic.gov.au/complaints](http://humanrightscommission.vic.gov.au/complaints)

면책조항: 이 내용은 안내만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법률 조언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